

삼척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안년월일 : 1995. 12.

제안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96. 1. 1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 '96 ~ 98년까지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수 있도록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1조1,200억원)하기로 함에 따라 조례개정

2. 주요골자

- 삼척시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로 인상한다.

3. 참고사항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 100분의7.5 "를 각각 " 100분의10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 하는 경우
3.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세율) ①생략</p> <p>.....</p> <p>.....</p> <p>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1.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u>7.5</u></p> <p>2.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u>7.5</u></p> <p>3.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u>7.5</u></p>	<p>제15조(세율) ①</p> <p>.....</p> <p>.....</p> <p>②</p> <p>1. <u>10</u></p> <p>2. <u>10</u></p> <p>3. <u>10</u></p>